제2311호

고양시보

2026년 9월 22일 (화)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3018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3019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고양시 조례 제3020호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고양시 조례 제3021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고양시 조례 제3022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고양시 조례 제302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3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33

고 시

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6-18호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40
고양시 고시 제2026-261호	도시계획시설[소로3-87호선,소로3-88호선(행신2-1구역 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2
고양시 고시 제2026-262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48
고양시 고시 제2026-263호	도로명주소 고시	49

발행 : 고양시 / 편집 : 언론홍보담당관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2097호 덕이동 패션1번지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공고 51

발행 : 고양시 / 편집 : 언론홍보담당관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조례 제3018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양시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제3항 중 “재적 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의”를 “개의(開議)”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강 경 아
	팀 장 성 명	통합돌봄팀장 이 상 목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조 은 비 (031-8075-3466)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제9조 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조례 제3019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일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중 “이하인”을 “이하이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3.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등에 드는 비용

4.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 등에 드는 비용

제6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부서장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으로,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관련 분야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요 사업비”를 “사업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걸리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에 부의할”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심의·조정”으로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제3항 중 “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조정하거나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주택과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주택과장 이 성 실
	팀 장 성 명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태 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이 상 원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최 지 영 (031-8075-3120) 양 형 선 (031-8075-3167)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2천만원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대상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용면적 60㎡ 이하	90%	세대당 60만원 이하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16호의 노후주택 중 같은 조례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80%		
전용면적 130㎡ 이하	30%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20%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4천만원	

14.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15.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항목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공용부 보수·교체 공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2000세대 미만	2천만원	
	3000세대 미만	2천5백만원	

16.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5백만원	

17.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2천5백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별표의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공사비 등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 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5. 제8호에 대한 지원 단지에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제17호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설비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
(선정대표자)</td><td>성명(대표자)</td><td>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여)</td></tr>
<tr><td>상호(법인명)</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소</td></tr>
<tr><td rowspan="3">피신청인
(선정대표자)</td><td>성명(대표자)</td><td>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여)</td></tr>
<tr><td>상호(법인명)</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소</td></tr>
<tr><td>조정 받으려는 사항</td><td colspan="2"></td></tr>
<tr><td>분쟁 발생 사유</td><td colspan="2"></td></tr>
<tr><td>당사자 간 협의 진행사항</td><td colspan="2"></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3">※ 작성 시 참고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 가능하나,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정보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 대상 중 '1994년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 관련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함(제15조제1항).

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도록 조정기한을 단축함(제24조제1항).

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정비함(별표).

마.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정보를 간소화함(별지 제4호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조례 제3020호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국장”을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기회의”를 “위원회의 정기회의”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 제목 “의사”를 “의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기관,”를 “기관”으로, “출석시켜”를 “출석하게 하여”로,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중 “시”를 “고양시”로,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공개하여서”를 “공개해서”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4조 중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를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토지정보과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토지정보과장 안 수 민
	팀 장 성 명	토지관리팀장 최 기 형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윤 민 성 (031-8075-3092)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의안건 검토의 내실화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제1조).

나. 당연직 위원에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과장을 추가함(제2조제3항).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0조 및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조례 제3021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수진 의원(찬성의원: 원종범 의원 등 15명)

□ **제안이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충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결원 발생 시 후임 위원의 위촉 절차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도모함(제5조제1항).

나.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

위원의 위촉 절차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함(제5조제3항 신설).

다. 위원 수 확대에 맞춰 출석위원이 2명인 경우 전원 찬성을 요구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의결 기준을 정비함(제10조제2항).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조례 제3022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장

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이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재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공소자·길종성·김수진 의원(찬성의원: 장예선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 아울러, 시장 교체 시 인수위원회의 임기 연장 규정 등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4제1항).

나.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함(제3조의4제2항).

다. 시장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임기 연장 규정을 마련함(제3조

의4제3항 및 제4항).

라. 적용 대상을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관계 법령에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함(제3조의4제5항).

마.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제3조의4제6항).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조례 제302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품 등의 수수, 부정 청탁, 위원 활동 중 알게된 정보의 사적 이용, 그 밖의 부정행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1조의 제목 “(자료제출 등)”을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신청 당사자(대리인, 용역사 등 위임자 포함)에게 안건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며 안건 상정 부서의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안건 신청 당사자가 공공기관

인 경우 안건 상정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비공개”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며 비공개”로 한다.

별표 29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
<td>다. 표고</td>
<td>(1) 법정동의 표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속한 법정동의 표고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table>
<tr><th>법정동</th><th>표고 기준</th><th>법정동</th><th>표고 기준</th></tr>
<tr><td>내유동</td><td>72m 이하</td><td>지영동</td><td>50m 이하</td></tr>
<tr><td>관산동</td><td>56m 이하</td><td>설문동</td><td>50m 이하</td></tr>
<tr><td>대자동</td><td>102m 이하</td><td>문봉동</td><td>58m 이하</td></tr>
<tr><td>벽제동</td><td>179m 이하</td><td>성석동</td><td>56m 이하</td></tr>
<tr><td>고양동</td><td>96m 이하</td><td>사리현동</td><td>62m 이하</td></tr>
<tr><td>주교동</td><td>50m 이하</td><td>식사동</td><td>51m 이하</td></tr>
<tr><td>탄현동</td><td>56m 이하</td><td>풍동</td><td>50m 이하</td></tr>
<tr><td>덕이동</td><td>50m 이하</td><td>중산동</td><td>59m 이하</td></tr>
<tr><td>가좌동</td><td>50m 이하</td><td>장항동</td><td>50m 이하</td></tr>
<tr><td>구산동</td><td>50m 이하</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대화동</td><td>50m 이하</td></tr>
<tr><td>법곳동</td><td>50m 이하</td></tr>
</table>
(2) 표고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표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개발구역 총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이고 해당 부분이 보전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임야

(나) 사방이 개발완료된 토지 및 법정 준공도로에 둘러싸여 단절된 임야로써 보전가치가 낮은 경우</td>
</tr>
</tabl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이해림·김학영·황선경 의원(찬성의원: 최성원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추가 조항 신설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제안설명에 있어 당사자가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안건 상정 부서가 안건 당사자인 것처럼 제안설명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 민간 신청 당사자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시 요약사항 공개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비.

○ 산지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21년 12월 28일 개정 시행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별표 29에서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및 단절된 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의 완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를 위원회 활동 정보로 사적이득

활용 등의 사유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 제외 규정 추가 신설(제66조의2제4호 신설).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회의 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고양시 안건상정 부서가 아닌 안건 신청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안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비(제71조제4항).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정비(제72조제2항).

라.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표고기준 및 주변 개발이 완료되거나 단절된 임야와 관련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제19조제1항제4호 별표 29).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규칙 제123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격무·기피”를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로, “공무원”을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 ① 영 제32조제2항제5호,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상시 수행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업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11호가목에서 정한 민원업무수당을 받으면서 격무업무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26조의3(종전의 제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가산점 등 세부내용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중 “별표 23”을 “별표 25”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응시자의 제출서류
2.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
3. 제15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4. 제16조에 따른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5. 제17조에 따른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별표 23을 별표 25로 하고,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의 제목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제26조의3 관련)”을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4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한 특례) 별표 23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의 전문직위(전문관)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해서는 내부 전문직위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2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인적자원과장 최 규 형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고 경 진
	담 당 자 성명・연락처	박 유 진 (031-8075-2387)

[별표 23]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3 관련)

1. 계획 인사교류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인사교류 근무경력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적용)	- 1년 이상 교류 시, 최초 교류 임용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0.1점	최대 2.4점

2. 전문직위(전문관)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최대 3점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4. 민원 업무 근무경력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이 제2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의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경력 1개월 마다 0.02점	최대 0.72점

<비고>

-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동일한 기간 내 동일한 직무수행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총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기준을 정비하고,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과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기준을 정비함(제2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 명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근거 반영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제26조의2).

다.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함(제26조의3 및 별표 23).

-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및 세부사항을 별표로 통합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 부여하도록 개선(최대 0.72점)
-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 근무경력 가산점의 중복 제한 및 총점 상한 기준 마련

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제34조).

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 2026 – 18 호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우리 구 폐기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지적기준점 총10점[지적도근점 폐기 10점(붙임 참조)]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3. 좌표 및 소재지, 기준점 폐기일 : 붙임 참조

4. 표지의 재질 : 철재

5.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6173)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목록

순번	기준점 명칭	번호	세계좌표(GRS80)		고시일	소재지	표지 재질	비고
			X(m)	Y(m)				
1	지적도근점	5351	568022.25	185741.99	2026. 9. 22.	일산동구 사리현동 372-8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2	지적도근점	5352	568008.84	185776.58	2026. 9. 22.	일산동구 사리현동 372-7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3	지적도근점	5353	567967.09	185807.48	2026. 9. 22.	일산동구 사리현동 667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4	지적도근점	3589	568660.82	183281.06	2026. 9. 22.	일산동구 설문동 945-6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5	지적도근점	8525	568718.59	183267.98	2026. 9. 22.	일산동구 설문동 1046-1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6	지적도근점	3591	568842.20	183240.27	2026. 9. 22.	일산동구 설문동 1031-1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7	지적도근점	4076	561990.77	177581.87	2026. 9. 22.	일산동구 장항동 1821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8	지적도근점	4016	562598.66	178045.95	2026. 9. 22.	일산동구 장항동 1764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9	지적도근점	2999	560350.34	180498.57	2026. 9. 22.	일산동구 백석동 1461-2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10	지적도근점	3000	560201.26	180655.74	2026. 9. 22.	일산동구 백석동 906-80	철재	지적도근점 망실

고양시 고시 제2026-261호

도시계획시설[소로3-87호선,소로3-88호선(행신2-1구역 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5-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3-87호선,소로3-88호선(행신2-1구역 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3-87호선

- 시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4-10
- 종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5-8

○ 소로3-88호선

- 시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99-12
- 종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3-87호선,소로3-88호선)사업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3	87	8~11	국지도로	498	행신동 173-4	행신동 1045도	일반도로	1978.03.21. (고고 제14호)	
금회시행	소로	3	87	8~11	국지도로	48	행신동 174-10	행신동 175-8도	일반도로		A= 292㎡
결정	소로	3	88	6~10	국지도로	250	행신동 1019도	행신동 206-1	일반도로	1978.03.21. (고고 제14호)	
금회시행	소로	3	88	6~10	국지도로	107	행신동 199-12도	행신동 206-1	일반도로		A= 71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79번길 24-12 (행신동)
- 성 명 : 행신 2-1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8.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소로3-87호선

연번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행신동	174-10	임	351	112	행신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 삼진연립 관리사무실				
2	행신동	175-8	도	1,508	179	고양시					
3	행신동	176-10	전	1	1	고양시					
계				1,860	292						

- 소로3-88호선

연번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행신동	199-12	도	676	102	고양시					
2	행신동	203-8	대	1,042	26	김*남	고양시 행신동 2**-* 이*연립 1**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권	
						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6*				
						정*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 흙다리길 7*-1*				
						박*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이*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1**호 (행신동)				
						이*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279번길 **, 4**호 (행신동,동*빌라)				
						임*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518번길 **, 2**동 1***호 (보정동,신촌마을 포**타운*단지)				
						김*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8길 **, 1***동 1***호 (상계동, 주*아파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태평로2가) (행신지점)	근저당권	
						김*현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1**, 1**동 5**호 (능평동, 오***빌아파트)				
						양*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80번길 **, 2**호 (행신동, 이*연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1가)	근저당권	
								김*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3*, 1**동 5**호 (삼송동, **마을 1*단지)	근저당권	
						이*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 햇*마을 2***-1***				
						정*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3-* 삼*연립 3-1**	지도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0-3	근저당권	
						신*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 이*연립 2**호				
3	행신동	203-1	대	867	62	김*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1**호 (행신동, 구**연립)				
						조*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 1**동 1***호 (신림동, 관**휴먼시아)				
						김*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1**호 (행신동, 구**연립)				
						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6번길 1*-1* 3**호 (탄현동)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중산지점)	근저당권	
						백*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1**호 (행신동, 구**연립)				
						김*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9길 2*-1* (응암동)				
						강*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1**호 (행신동, 구**연립)				
						황*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4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응암오거리지점)	근저당권	
						강*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2**호 (행신동, 구**연립)				
						임*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 7**동 1***호 (주엽동, **마을)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3**				
						박*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 2**동 1***호 (풍동, **마을)				
						연*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8, *층호 (화정동)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태평로2가) (행신지점)	근저당권	
						김*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1*, 5**동 3**호 (행신동, **마을)				
						최*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 2**호 (행신동, 구**연립)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행신중앙지점)	근저당권	
4	행신동	205-53	도	1,575	314	고양시					
5	행신동	203-12	도	56	56	이*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6*-2*				
6	행신동	204-7	도	103	103	고양시					
7	행신동	680-9	도	47	47	국토교통부					
8	행신동	204-14	도	2	2	고양시					
계				4,368	712						

□ 사업 위치도


사업대상지
1Km
500m
250m
덕양구청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화정동
고양경찰서
능곡동
능곡병원
행주외동
행주동
행주내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역
능곡역
유로분기점
18일산인터체인지
행주북단인터체인지
대곡
39
용도동
홍도동
도내동

고양시 고시 제2026-262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제88조 제9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일산동구 식사동 725-1번지 일원	42,057	감) 42,057	-	고양시고시 제2006-41호 (2006. 5. 29.)	실효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지 - 42,057㎡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

2. 실효일자 : 2026. 5. 30.

3. 실효사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개발과(☎ 031-8075-3142) 및 도시계획정책관(☎ 031-8075-30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양시 고시 제2026 - 2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56번길 19-108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4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56번길 19-108	2026-09-22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1560m에 위치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40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56	2026-09-22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5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133-11	2026-09-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공고 제2026-2097호

덕이동 패션1번지 인정구역 변경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 **전통시장 구역 변경 내역**

번호	시장명	소재지	내용	변경내역		지정일
				당초	변경	
제2026-2호	**덕이동 패션1번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13 일대	인정구역 확대	8,789㎡	12,096㎡	'26. 9. 14.